



공지사항

광고 및 고시

◎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8-3호

1998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분야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1998년도 신규 지원대상 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월 15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1. 지원분야

사 업 구 분	지 원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고시된 206개 기술분야 ○ 자유응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만불 이상의 수입품목으로 조기 실용화가 가능하고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로서 상기 206개 공고분야외의 기술 - 기술혁신형 벤처기업기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 고시 1996-38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협력상대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용화개발 연구로서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년 내외에 산업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기술, SI기술 등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서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음 <p>※ 연구기획 사업실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p>

2.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단, S/W 업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는 예외로 인정)
- ②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③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 ④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전문회사,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 ⑥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단체
- ⑦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법인
- ⑧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우선지원과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소기업
-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나. 사업별 지원방법

- 공통핵심기술, 국산화 시급기술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총 개발비의 2/3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1년 기준으로 과제당 평균 1.2억원 내외)
- 벤처기업기술개발사업
 - 지원기간 : I 단계(6개월), II 단계(1년),

III 단계(1년)

- 지원금액 :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 I 단계(5천만내외), II 단계(1억원내외), III 단계(1.5억원내외)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사전 연구기획사업 : 전액 정부지원(과제당 3천만원 이내)
 - 사업기간 : 4개월

다. 신청방법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함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6개 기술분야는 공고된 각 기술분야별 개발내용 및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 세부기술과제는 일괄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괄주관기관이 신청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98. 2. 24(월)~'98. 2. 28(금)(5일간)(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유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02-8298-642/9)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롯데관악타워 6층(우 156-010)

마. 참고사항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은 1개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년 1.2 억원 내외로 하며 총 개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벤처기업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및 동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함
- 기술료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 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50%(단 창업한지 7년이내의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5년 균등분할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예산사정과 분야별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과제가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사업(주관기관이 비영리 법인기관에 한함)은 개발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의 경우 1차년도 민간참여 및 민간부담금 없이 수행이 가능함(단, 2차년도 부터는 반드시 참여기업 및 민간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함)
- 기술료 非徵收과제로 공고되었으나 심의시 기술료 징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과제의 경우 신청시에 개발결과의 공동 활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 기술료 징수과제로 변경후 2차년도 부터는 참여기업 및 민간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획결과 “우수”로 판정된 과제에 한해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추가 제출토록 함('98년 8월경)

바. 문의처

- 세부 기술개발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문의
- 사업안내 및 양식(벤처기업 확인절차 포함) :
 - 인터넷(<http://www.itep.re.kr>)
 - 하이텔 : 공개자료실 → 7. 일반자료 → 1. 과학/기술 → L1 hhssrr
 - 천리안 : 공개자료실 → 8. 워드/문서 → 7. 기타워드프로세서 관련/양식 → from itpel
-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S/W분야 : 02-8298-682/9
- 전통고유기술분야 : 02-8298-761/4

■ '98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분야 (중전기기)

구 분	기 술 분 야
중전기기	1. 비상발전 및 이동형 중·소형 발전기 기술개발
	2. 아몰퍼스 초크코일 등 전력기기 부품 기술개발
	3. 비접촉 충전기 등 스위칭 전원장치 개발
	4. 전동기 제어를 위한 Drive 및 Anti-sway 시스템 개발
	5. 축소형 수전설비 및 배선자동화 개폐기 기술개발

◎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7-315호

1997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 공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및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2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I. 1998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1. 총 칙 : 별첨
2. '97단체수의계약물품 : 별첨

II. 1998년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1. 총 칙 : 별첨
2. '98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별첨

I. 1998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1. 총 칙

가. 목 적

- 이 총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물품의 명칭 및 분류

- 1) 물품의 명칭분류는 원칙적으로 정부물품 분류

표의 품명식별번호(7단위, 소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품목분류(8단위)에 의한다.

- 2) 정부물품 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은 물품은 수요처 규격 및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에 따라 분류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여러품목을 군별로 묶거나 또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여러 물품을 군별로 묶어 분류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개별물품명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대상조합 및 지역

- 1) 계약대상 지역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의거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의한다.
- 2) “전국조합”은 구매기관이 소재한 구역내 조합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구역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3) “지방조합”은 해당 업무구역내에서 소요로 하

는 물품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당해지역에 지방조합이 계약체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합회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기관은 해당물품을 지정받은 지방조합중 1개의 지방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

- ① 2개이상의 업무구역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을 중앙기관이 계획 구매하는 경우
- ② 지방구매기관의 중앙기관 구매의뢰 및 중앙기관이 계획구매에 의거 중앙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③ 구매기관의 업무구역내에 회원조합이 없거나 계약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과 관련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라.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중 “중소기업 제품구매 증대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마. 기타의 규정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규와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물량배정, 수혜기준 및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단체수의계

약물품 지정 추천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2. 단체수의계약물품 : 별첨

II. 1998년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1. 총 칙

가. 목 적

- 이 총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물품의 분류

- 1) 물품의 명칭분류는 원칙적으로 정부물품분류표의 품명식별번호(7단위, 소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품목분류(8단위)에 의한다.
- 2) 정부물품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은 물품은 수호처규격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에 따라 분류한다.

다. 지정물품의 선정

- 지정물품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① 익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 추천시 제외된 물품
 - ② 전년도에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
 - ③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다량으로 소요될 것으

- 로 예상되는 물품
- ④ 국내 총 생산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물품으로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로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⑤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적합한 제품으로서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물품

라. 계약시 주요 고려사항

- 1) 구매기관은 지정된 물품구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에 의하여 구매토록 하여야 한다.
- 2) 구매기관은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지방기관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 지방기관이 중앙기관에 구매를 의뢰한 물품, 중앙기관의 계획구매물품 중 지방구매분 등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소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음. 다만,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적어 적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구매기관은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생산 중소기업체에 한하여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 제품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별첨

부 칙

- 1. 이 공고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통상산업부공고 제1996-152호('97. 12. 30)는 이를 폐지한다.

■ 전기분야 단체수의계약 품목

□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 □

<p>▲ 전기조합 △개폐기, 절연수동 및 자동(가공설치용의 것으로 SF₆가스개폐기에 한함) 클램프(전기용에 한함) △무정전전원장치 △변압기 △발전기, 디젤엔진(1,000Kw 초과 및 해상용, 방음형은 제외) △정류기, 부동용</p> <p>▲ 자동제어반조합 △제어반, 자동(전기조절장비로서 자체 프로그램 또는 외부명령에 의하여 감시 및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한함. 단, 수처리제어설비, 조명제어설비, 주차관계제어설비 제외)</p> <p>▲ 전선조합 △전화선(비닐절연, 옥외전화선, 옥내전화선, 강심옥외전화선 포함) △케이블, 제어 △옥외용 비닐</p>	<p>절연전선(OW) △점파선(나이론 피복 2개 연접파선, PVC 점파선, ESS점파선 포함) 강심알미늄연선(ACSR-OC를 포함하며, AW는 제외) △600V 비닐절연 전선(IV)</p> <p>▲ 전등기구조합 △형광등 및 백열등기구 △전광판(체육관, 경기장용 제외)</p> <p>▲ 조명조합 △자동점멸기(조명제어장치 포함) △가로등기구(보안등, 터널등, 방폭등기구, 제어장치 포함) △안정기(형광등용 제외) △투광등기구(탐조등 및 조명탑 포함) △무대조명장치 △방전등램프(수은, 메틸, 나트륨램프 포함) △형광램프 △교통신호등(제어장치 포함)</p>
---	--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p>▲ 전기조합 △ 차단기, 누전 △ 애자(내오손용 결합, 지지라인 포스트, 저압인류, 현수) △ 배전반(154Kv, 345Kv용 보호배전반에 한함) △ 전압조정기(AVR)에 한함 △ 리액터(분로용 제외) △ 충전장치(충전기)</p> <p>▲ 자동제어반조합 △ 계장제어장치(수처리설비에 한하며, 일일처리능력으로 하·폐수는 3만톤, 상수는 10만톤 이하에 한함)</p>	<p>▲ 전선조합 △ 연동선 △ 케이블, 시내(PE절연알루미늄차폐케이블, PE시내쌍케이블, LCP시내케이블을 포함하며, 폼스킨케이블은 제외함) △ 케이블(셀프)써포오팅</p> <p>▲ 조명조합 △ 가로등전주(철제 및 주철제는 제외) △ 스포트라이트 △ 항공유도등(제어장치 포함)</p> <p>▲ 전등기구조합 △ 전기스탠드 △ 산테리아</p>
--	---

